27. 특수취급우편물 연도별 이용량

【담당부서 : 우편사업단 우편사업과 등기통상담당 ☎ 044-200-8247,
소포사업과 소포기획담당 ☎ 044-200-8272】

종별 / 연도별	보험취급			내용 증명	배달증명		선거우편	
	통화	물품	유가증권		통상	소포	통상	소포
2008	40	29	532	5,541	2,249	15	2,927	
2009	29	26	572	6,303	2,252	26	650	
2010	35	25	591	6,098	2,336	13	2,662	
2011	36	36	681	6,118	2,048	16	939	
2012	32	32	670	7,927	2,181	15	5,699	
2013	26	32	628	7,377	2,077	13	113	
2014	23	28	574	8,176	2,579	11	2,768	
2015	23	22	536	7,138	2,383	12	62	
2016	14	20	512	6,912	1,926	17	2,264	
2017	**15**	**26**	**448**	**6,920**	**1,607**	**16**	**4,256**	
연평균증감률								
'08. ~ '12.	△5.4	2.5	5.9	9.4	△0.8	0.0		
'13. ~ '17.	△12.8	△5.1	△8.1	△1.6	△6.2	5.3		

※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 제12002호)

■ 주요내용 : 특수취급(보험취급, 내용증명 등) 우편물 연도별 접수현황

■ 관련용어

- 보험취급 : 통화, 귀중품, 유가증권에 대한 등기취급을 전제로 보험가액에 대하여 보상
- 내용증명 :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
- 배달증명 :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배달 또는 교부한 경우 그 사실을 배달한 우체국에서 증명
- 선거우편 : 선거 또는 투표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우편물로서 우선적으로 우편물을 취급 및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2017.3.1.자 시행)
- 대금교환 : 위탁받은 물건을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취인으로부터 받아 발송인에게 송금
- 국내특급 : 특급우편 취급지역에 긴급을 요하는 우편물을 통상보다 더 신속하게 송달하는 우편물
- 특별송달 : 민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
- 민원우편 : 민원서류를 우편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신청하고 그에 따라 발급된 민원서류 송달 우편물
- 모사전송우편 : 우체국에서 서신, 서류등의 통신문을 접수하여 전자적(팩스) 수단으로 송달한 우편물
- 합장소포 : 서신을 함께 넣어 송달한 소포우편물(2012. 3. 15. 자 폐지)

(단위 : 천통)

대금교환		국내특급		특별송달	민원우편	모사전송 우편	합장 소포
통상	소포	통상	소포				
1	5	116,557	1,714	25,147	272	1587	7
1	5	119,686	1,734	25,978	265	1846	6
1	3	115,657	1,823	27,010	285	2,249	4
1	3	108,148	1,925	27,546	280	2,608	4
-	4	101,428	2,022	27,273	283	2,615	2
-	5	102,844	2,127	28,166	288	2,914	1
-	6	95,051	584	25,497	292	2,952	-
-	5	94,950	415	16,973	282	2,995	-
-	4	93,153	383	13,144	300	2,694	-
-	**8**	**91,214**	**410**	**10,678**	**275**	**2,382**	**-**
	△5.4	△3.4	4.2	2.0	1.0	13.3	△26.9
	12.5	△3.0	△33.7	△21.5	△1.1	△4.9	